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507

발의연월일: 2025. 4. 1.

발 의 자:이용선・박홍배・김문수

송재봉 • 서미화 • 김재원

황 희 · 오세희 · 김남희

김성회 · 전용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이들 주택은 재산 증식이나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일례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피해가 심한 소음대책지역(소음영향도 70Lden 이상)의 주민이 주택매수를 청구하면 한국공항공사가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하며, 구분소유권에 따라 일괄 매수가 불가능하고, 멸실 전까지 다주택을 취득·보유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따라서, 공평 과세와 조세 정의의 취지에 맞도록 다른 법률에 따른 매수청구로 인해 공공기관이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제3호 신설).

법률 제 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른 매수청구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취득한 주택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과세표준) ① (생 략)	제8조(과세표준) ① (현행과 같
	승)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본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다른 법률에 따른 매수청구
	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취득한
	<u>주택</u>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